

# 중국의 식품 수출입 제도 및 규정

## 1. 중국의 안전허가제도 (Safety Licence System)

중국은 상품검사법, 관련 법령 및 국제관례에 따라 주요 수입 제품 및 그 제조자들에 대한 안전, 보건 및 환경보호를 위한 “수입제품안전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989. 8. 1 국가수출입상품검사국(SACI: The State Administration of Import and Export Commodity Inspection)은 수입제품안전허가제도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수입상품목록(이하 목록이라 함)을 발간하였다. 최초의 목록에 포함된 품목은 자동차, 자전거, 오토바이엔진, 냉장고(음식냉동고포함), 냉장고 압축기, 에어컨, 에어컨 압축기, TV 세트 및 kinescope이다. 1990. 5. 1부터 SACI로부터 수입상품안전허가증을 받고 상품심사부(CCIB: China Commodity Inspection Bureaux)로부터 안전마크의 사용승인을 받은 상기 품목들만이 중국으로의 수출이 허가되었다.

수입상품의 안전허가제도를 이행하기 위하여 SACI는 중국산 상품과 수입상품과의 동등대우원칙에 따라 “안전검사항목과기준”, “공장생산조사 및 검사조건개요”와 같은 일련의 절차와 조치를 하였다. 한편, 안전허가사무소(Safety Licence System Offices)가 외국 제조회사들의 허가신청과 안전허가증의 발급 및 관련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그리고, SACI의 안전허가의 검토기관들이

Beijing, Shanghai, Guangdong, Hubei, Jilin 및 Shaanxi의 CCIB사무소 안에 각각 설치되어 허가신청의 검토와 조사를 하고 있다. 그 밖에 SACI로부터 인정받은 9개의 상품검사시험소가 수입상품샘플의 안전항목에 대한 검사(type-testing)를 수행하고 있다. 다음은 수입상품의 안전허가증을 획득하기 위한 주요 신청절차이다.

1. 해외제조사나 그 대리인은 SACI의 안전허가사무소에 허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SACI 인증 시험소는 SACI가 설정한 안전검사 항목과 기준에 따라 샘플에 대한 검사(type-testing)를 한다.
3. SACI에서 임명된 전문가들이 공장을 방문하여 공장생산과 검사조건들을 검사한다.
4. 제출된 샘플이 검사에 합격하고, 그 제품공장의 생산과 검사가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안전허가증을 발급받으며 CCIB 안전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5. SACI는 필요한 경우 안전허가증을 발급받은 제조자의 생산 및 검사조건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신청절차의 간소화와 관련 경비의 절감을 위하여 SACI와 안전허가사무소는 검사인증과 위탁을 위하여 외국검사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양자관계를 성립하여 오고

있다. 현재 JAPAN MARINE SURVEYORS & SWORN MEASURER'S ASSOCIATION(NKKK), JAPAN MACHINERY & METAL INSPECTION INSTITUTE(JMI), CANADIAN STANDARDIZATION ASSOCIATION(CSA), TELHNISCHER UBERWACHUNGS-VEREIN RHEINLAND AND BAYERN

(TUV), Instituto Italiano and del Marchio di Qualita (IMQ), STANDARDS AND METROLOGY COMMISS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그리고 SACI의 해외지사들이 공장조사와 추가서비스를 위한 부분적인 권한을 SACI로부터 부여받았다.

## 中國國家進出口商品檢驗局 進口商品安全質量許可制度機構圖

中華人民共和國國家進出口商品檢驗局安全質量許可制度 辦公室  
住所：北京市建國門外大街12號 電話：5002163  
TLX：210076 SACI CN FAX：01-5002163

北京審查部	廣東審查部	上海審查部
住所：北京市建國門外大街12號	住所：廣州市環市東路370號	住所：上海市中山東一路13號
電話：5002376	電話：765447	電話：3217990
TLX：210068 CCIB CN	TLX：44435 CICGD CN	TLX：33373 CICSH CN
FAX：01-5001140	FAX：020-750115	FAX：021-3215134
湖北審查部	吉林審查部	陝西審查部
住所：武漢市漢口萬松園路3號	住所：長春市斯大林大街81號	住所：西安市西一路99號
電話：353771, 35428	電話：869384	電話：712912
TLX：40206 CCIHB CN	TLX：83080 CCUB CN	TLX：70045 CIBSX CN
FAX：027-561590	FAX：041-827200	FAX：029-710993

## 2. 국가수출입상품검사국(中國國家進出口商品檢驗局：State Administration of Import and Export Commodity Inspection：SACI)

중국의 수출입상품검사법(이하 상품검사법)은 중국

전체의 수출입 상품의 검사를 책임지는 수출입상품검사국(SACI)을 국무원이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상품검사국이 설치한 상품심사부(China Commodity Inspection Bureaux：CCIB)는 관할지역내의 수출입 상품의 검사를 책임진다. 중국은 정책과 법령을 일관성 있게 시행하기 위하여 SACI에게 집중화되어 있고 단일한 수출입상품의 검사체도를 운영하고 있다.

## 1) 수출입상품검사국(SACI)의 책임

수출입상품검사법에 의하여 SACI에 부여된 책임은 다음과 같다.

- (1) 전국적인 수출입상품 검사업무에 대한 법률의 집행과 관리, 상품검사에 대한 원칙·정책·규칙·규정·기획의 설정, 검사방법과 수출입상품의 기준 개발
- (2) 상품심사부(CCIB)에 의한 검사대상인 수출입상품 목록의 작성, 조정, 이행
- (3) 수출입상품의 검사면제 신청의 검토 및 승인
- (4) 외국관련기관과 수출입상품의 동등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의 체결, 수출입 상품의 검사 업무를 수행할 국내의 검사기관의 인정
- (5) 외국기관이 의뢰한 수출입상품의 품질인증 수행에 대한 수락
- (6) 법률에 따라 수출입상품의 검사를 수행할 검사기관의 지정
- (7) 제품수령자, 사용자, 생산·관리·저장·수송 부서에서 행하는 수출입제품 검사에 대한 관리·감독과 수출입상품 관련 위생등록, 검사 및 인증을 맡고 있는 지정 또는 인정검사기관, 관련 생산 부서 및 품질허가증 발급에 대한 관리·감독
- (8) 대외교역 관련 서비스에 대한 감독과 조사에 대한 규정 설정과 관련 서비스의 처리
- (9) 재검사 신청의 접수 및 재검사 결과의 통보
- (10) 수출입상품 검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11) 국제회의 및 국제기술교환활동에 국가대표로 참가

## 2) 수출입상품검사국(SACI)은 어떻게 임무를 수행하는가

SACI는 1990년에 수출입상품 중 검사대상 품목리스트(이하 목록)를 발표하였다. 그 목록에는 수입상

품 17개 분류의 303품목과 수출상품 17개분류의 589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목록에 들어 있는 수입상품이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판매나 사용이 허가되지 않으며, 목록에 들어 있는 수출상품이 “수출입상품심사부(CCIB)”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기준미달의 판정을 받은 경우 수출이 허가되지 아니한다.

상기 언급된 수출상품들은 CCIB가 발급한 검사증이나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세관이 통과를 시킨다. SACI는 수입상품 안전허가제도의 수행과 상품검사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특정제품의 안전항목에 대한 안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입상품 목록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설정하고 공표한다. 목록에 포함된 수입상품은 샘플에 대한 안전항목의 검사(type-testing)를 받아야 하며, 공장생산조건에 대하여 SACI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상품들은 기준과 요건에 적합한 것이 입증되고, 안전허가증을 발급을 받고, CCIB의 안전마크 사용의 허가를 얻은 후에야 중국에 수입이 허가된다.

SACI는 수출상품의 품질허가에 관한 지침을 만들고 공표했다. 그 지침은 기계류, 전자제품, 의류, 섬유, 화장품 및 석탄과 같은 주요 수출 상품에 적용된다.

CCIB가 품질허가증을 발급한 품목에 대하여만 대외경제 또는 교역관련 부서에서 수출허가증을 발급한다.

그리고 CCIB는 품질허가가 있는 상품의 검사신청만을 접수한다.

“식품위생에관한중화인민공화국임시법률”에 의하면, 수출식품의 관리는 SACI가 관장한다. SACI와 보건부는 합동으로 “수출식품위생규정”과 “수출식품공장/창고 최저위생요건”을 제정하였다. 각 지역 CCIB는 수출식품 공장/창고에 대한 검사와 조사를 하며, 각각 등록증을 발급한다. SACI는 외국정부가 신청한 수출식품 공장/창고의 검사와 등록을 책임지며, 수입국가의 보건당국이 제공한 요건에 공장/창고

조건이 맞는지 확인한다.

이외에 SACI는 “수출입상품검사표시지침”, “외국 검사시험소인정규정”, “수출입상품봉인(Sealing)관리 규정”, “중국원산지표시-Origin Form A)의 GSP인 증서발급에관한규정”을 제정했다.

### 3) 상호인정프로그램

지역상품심사부 혹은 상품검사국(SACI)이 지정한 검사기관은 SACI와 외국관련기관이 체결한 협정에 따라 자격 있는 수출입상품에 대하여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중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해외 품질 및 안전 마크는 UL마크(Underwriters Laboratories Ltd.), IWS마크(the International Wool Secretariat), CSA안전마크(Canadian Standardization Association)등이 있다.

### 4) 상품검사국의 기구

SACI는 200여 개의 상품심사부(CCIB)와 300여 개의 시험소를 설립하였으며, 그중 53개 시험소가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다. 일정한 검사를 통과하여 100여 개의 국가시험소와 250여 개의 지방(省) 시험소가 SACI와 CCIB로부터 각각 인정을 받았다.

### Major CCIBS Under SACI

CCIB Ning xia  
4, Sibeixiang, Minle West Road,  
Yinchuan 750004

CCIB Beijing  
12, Jianguomenwai st  
Beijing 100022

CCIB Tianjin  
6, Pukou St.,  
Tianjin 300042

CCIB Hebei  
56, Beima Road,  
Shijiazhuang 050051

CCIB Shanxi  
Zhongduan, Binhe West Road,  
Taiyuan 030002

CCIB Neimonggol  
Zhaowuda Road,  
Hohhot 010010

CCIB Liaoning  
100, Sidalin Road,  
Dalian 116001

CCIB Jilin  
81, Sidalin Road,  
Changchun 130021

CCIB Hilongjiang  
125, Zhongshan Road,  
Harbin 150001

CCIB Shanghai  
13, Zhongshan East No. 1 Road,  
Shanghai 200002

CCIB Jiangsu  
1, Baixia Road,  
Nanjing 210001

CCIB Zhejiang  
8, Baoshi No. 2 Road,  
Hangzhou 310007

CCIB Anhui  
97, Wuhu Road,  
Hefei 230061

CCIB Fujian  
84, East Road,  
Fuzhou 350001

CCIB Xiamen  
31, Dongdujinding Road,  
Xiamen 361012

CCIB Jiangxi  
1, Guangchang South Road,  
Nanchang 330002

CCIB Shandong  
5, Henan Road,  
Qingdao 266001

CCIB Henan  
87, Jinshui Road,  
Zhengzhou 450053

CCIB Hubei  
3, Wansongyuan Road, Hankou,  
Wuhan 430022

CCIB Hunan  
4, Lizishan, Shazitang,  
Changsha 410007

CCIB Guangdong  
370, Huanshi East Road,  
Guangzhou 510060

CCIB Shenzhen  
3, Wenjin South Road,  
Shenzhen 518002

CCIB Hainan  
21, Longkun North Road,  
Haikou 570005

CCIB Guangxi  
11, Gucheng Road,  
Nanning 530022

CCIB Sichuan  
Chenghua Road,  
Chengdu 610081

CCIB Chongqing  
147, Zourong Road,  
Chongqing 630010

CCIB Xinjiang  
6, Beijing South Road,  
Urumqi 830011

CCIB Guizhou  
257, Waihuancheng East Road,  
Guiyang 550001

CCIB Yunnan  
27, Haigeng Road,  
Kunming 650034

CCIB Xizang  
267, Beijing West Road,  
Lasa 850002

CCIB Shaanxi  
99, West No. 1 Road,  
Xian 710004

CCIB Gansu  
75-1, Dayantan,  
Lanzhou 730000

CCIB Qinghai  
11, Nanshan East Road,  
Xining 810000

### 3. 중국의 수출입검사 관련 법령 개요 (Briefing on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China's Import and Export Inspection)

중국정부는 수출입상품의 검사에 커다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1951년에 상품검사임시법령을 제정하였다. 그 후 1954년과 1984년에 임시수출입상품 검사법령이 만들어진 후 1989년에 중국수출입상품검사법(이하 상품검사법)이 제정되었다.

현행 상품검사법은 중국의 수출입상품의 검사에 관한 기본법이다. 동법은 목적, 업무, 관리제도, 수출입상품의 검사와 감독 그리고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은 국무원(State Council)이 설립한 수출입상품검사국(SACI)이 전국적으로 수출입상품의 검사를 책임지며, SACI가 설립한 상품심사부(CCIB)와 CCIB가 인정한 검사기관들이 법령에 따라 수출입상품의 검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상품검사법에 의하여 권한을 받은 SACI는 “CCIB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출입상품의 목록(이하 상품목록)”을 대외무역의 발전에 발맞추어 만들고, 조정하고, 공표한다. 동 목록에는 수입상품 17개 분류 303개 품목과 수출상품 17개 분류 589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상품목록에 포함된 수출입상품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CCIB의 검사대상인 수출입상품은 CCIB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입상품은 판매 또는 사용이 허가되지 아니하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흡한 수출상품은 수출허가를 받을 수 없다. 수출입상품에 대한 검사는 품질, 제조방법(specification), 양, 무게, 포장 및 안전과 위생요건이 포함된다. 주요 검사기준은 법령상 강제기준이나 외국교역계약에 의한 검사기준에 따른다.

수입상품이 CCIB의 검사결과 품질기준에 미흡하거나 무게나 양이 손상되었거나 부족한 경우에 각각

부적합 통보가 나가며, 통보를 받은 자는 검사부적합 통보에 대하여 배상(compensation)을 요구할 수 있다. 중요 상품과 대형장비의 세트에 대하여는 수출국에서 최초검사를 행할 수 있으며, CCIB는 필요한 경우 검사에 참여할 검사관을 파견할 수 있다. 법률은 또한 CCIB가 수출위험물의 포장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검사를 받지 아니한 위험물이나 검사요건에 미흡한 위험물은 수출허가를 받을 수 없다. 부패하기 쉬운 식품을 운반하는 배 또는 컨테이너는 선적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품 선적에 관한 기술적 조건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품운반을 허가받을 수 없다.

수출입상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는 필요한 경우 일부 중요한 수출입상품과 그 제조자에 대한 품질허가제도(Quality Licence System)를 시행한다. 1989년에 SACI는 안전허가제도(Safety Licence System) 적용대상 수입상품목록을 발간하였다. 상품목록에 포함된 수입상품에 대하여는 샘플의 안전기준 관련 항목이 제출되어야 하며, 공장생산과 검사조건을 CCIB가 각각 조사와 검사를 행한다. 관련 기준과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어 안전허가증(Safety Licence Certificates)이 발급되고, 안전마크(Safety Marks)가 부착된 상품만이 중국수출을 허가받는다.

1983년 이후, 품질허가제도는 기계류, 전기제품, 의류, 직물, 도자기, 석탄 등 주요 수출품목에 시행되어 왔다. 이러한 주요 수출품목을 전문으로 하는 제조자나 가공업자에 대한 제품과 생산조건은 CCIB가 검사를 행한다. CCIB로부터의 품질허가와 외국경제 또는 무역관련 부처의 수출허가가 없는 경우 어떠한 상품도 외국기업(外資經營企業)이 구입할 수 없으며, CCIB의 검사후 수출이 가능하다. 수출식품 공장/창고는 위생등록을 받아야 한다. 등록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번호가 없는 식품은 수출을 위한 생

산이나 저장이 허가되지 아니한다. 추가로 SACI는 법률에 따라 수출입상품의 인증을 수행한다. 인증 대상 품질합격 상품은 품질, 안전 또는 위생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검사 후 기준에 합격한 수출입상품은 승인된 검사 마크 또는 검사봉인을 부착할 수 있다.

상품검사법에 따라 SACI는 “수출입 상품의 재검사 절차규정”, “수출입상품 검사면제 규정”, “해상운송 수입상품의 피해조사 규정”, “수입제품의 안전허가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규칙 및 절차 규정”, “원산지서식A의 GSP인증서 발급을 위한 규정”등을 제정하였다.

#### 4. 중국의 수출입상품 검사기구와 검사역량(Import and Export Commodity Inspection Organizations and Inspection forces in China)

중국은 수출입 상품의 검사에 대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29년부터 실크, 면화, 가죽, 桐油 그리고 가축 등에 대한 수출입검사를 전담하는 검사국들이 Shanghai, Guangzhou, Wuhan, Qingdao, Tianjin 그리고 Chongqing에 설치되었다. 1949년 새 정부 출범이후 국무원에 의하여 설치된 수출입상품 검사국(SACI)이 전국에 걸쳐 수출입상품의 검사를 책임지게 되었다. 그리고 SACI는 여러 성과 자치구의 수도, 중앙정부 직할, 특별시, Ximen, Chongqing, Shenzhen에 수출입상품심사부(CCIB)를 설치하였다. 각 CCIB는 관할 구역내의 수출입상품의 검사를 책임진다. 한편, 대외무역항구, 주요 수출상품 생산기지, 수출입상품 집하장에 200여 개 이상의 CCIB 지부/사무소가 설치되었다. 국가수준에 100여 개의 상품검사시험소가 SACI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며, 성과 수준의 250여 상품검사시험소가 CCIB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하여 여러 종류의 훈련과 주제를 포함한 전국적인 상품검사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

지난 2~30년간의 상품검사 발달에 따라, SACI는 이제 10,000여 명의 기술자와 전문가를 자랑하고 있다. 이들 중 5%는 관련 국가기준, 전문분야기준, 국제검사·실험기준에 능숙한 수석 기술자와 경제학자들이다. 또한 SACI는 plasma spectrometer, X-ray photoflurometer, X-ray diffractometer, gas chromatograph-mass spectrometer, NMR spectrometer, microbiological fast detector 등 고도 검사·실험 장비를 보유한 검사시험소를 300여 개 이상 거느리고 있다. 현재 53개 상품검사시험소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대형자동샘플링 장비가 석탄, 곡물, 광물로부터 샘플을 채취하기 위하여 Qinhuangdao, Beilun, Lianyungang, Nantong에 설치되었다.

그 밖에, SACI는 수출입상품검사기술연구소를 설립하였고, Wuhan과 Guangdong에 두 개의 지부를 설치하였으며, 광물·화학제품·식품·직물·전기장비·석탄의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10여 개의 검사·시험 센터를 전국에 걸쳐 설치하였다.

#### 5. 중국의 수출식품 관리(Export Food Control in China)

중국의 식품위생법은 수출을 위한 모든 식품은 수출입상품검사국(SACI)과 지역상품심사부(CCIB)의 위생검사 및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관은 CCIB가 발급한 인증서를 검사하고 수출식품을 통관시킨다.

1984년에 SACI와 보건부는 수출식품의 위생검사와 감독을 강화하고 인체에 음식감염과 위해요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출식품 위생관리규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여러 종류의 가공식품, 음식용 원재료, 전통관습에 따라 의약품이 첨가된 식품 등 모

든 수출용 식품은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기준이하로 판명된 식품은 수출이 허가되지 아니한다.

CCIB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고 인증서를 발급 받은 수출식품은 인증서의 유효기간 내에 수출을 위하여 선적될 수 있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식품은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출식품의 위생감독과 검사를 위한 CCIB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식품의 가공공장, 도축장, 냉동고 및 창고 (이하 공장/창고)에 대한 위생감독과 검사 수행
2. 수출식품의 품질검사 관련 기준과 규정의 설정과 이행 감독
3. 수출식품의 공장/창고의 통일된 등록방법 관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중국 내에서 수출용 식품을 생산, 가공, 도축과 저장을 하는 모든 공장/창고는 첫번째로 지방공중보건/위생당국으로부터 위생허가를 받고, 생산을 관장하는 당국의 승인을 얻은 후 CCIB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CCIB의 검사결과, "수출식품 공장/창고 최저위생요건"과 "수출식품 공장/창고 등록세부규칙"에 정한 환경, 설비, 원재료, 부재료, 가공 및 운영, 포장, 저장, 수송과 검사의 위생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공장/창고는 등록증 또는 등록코드번호를 별도로 발급 받는다.

해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장/창고는 수입국의 보건관련 당국이 설정한 검역 및 위생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외국정부에 대한 등록은 SACI가 관장한다.

어떠한 공장/창고도 등록증과 등록코드번호가 없이는 수출식품을 생산, 가공과 저장을 할 수 없다. 관련국가로부터 등록코드번호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발급을 받지 못한 공장/창고는 해당국가에 수출

을 위하여 식품을 생산하거나 저장할 수 없다.

1985년부터 1990년 사이에 수출식품 24개 분류의 5,066개 공장/창고가 SACI로부터 검사를 받고 등록되었다. 그중 식육, 통조림 식품, 수산물, 카제인 등 관련 138개 가공공장이 독일, 영국, 미국, 프랑스, 폴란드 등 14개국가로부터 위생등록을 받았다.

그밖에 SACI는 등록된 수출식품 공장/창고에 대하여 계속적인 감독을 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CCIB는 3년간의 등록 유효기간중 어느 때에도 이들 공장/창고의 생산, 저장과 식품수출에 대하여 불시 검사를 할 수 있다. 어떠한 등록 공장/창고가 위생요건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CCIB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경고, 일정기간내의 개선명령, 또는 등록취소의 조치를 취한다. 수입국가에 등록된 어떠한 공장/창고가 위생요건에 위반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국가에 대한 식품수출을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이러한 공장/창고들은 개선을 통하여 위생규정과 요건에 적합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만 수출을 재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CCIB는 관련 규정과 기준 그리고 계약조건에 따라 생산·가공이 이루어지는지를 감독하는 한편, 생산공장으로 부터 기준미달 식품이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무작위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가 공기업에 품질감독관을 상주시킬 수 있다.

## 6. 식품수출을 위한 공장 및 창고 위생등록 규정(Detailed Rules for the Sanitation Registration of Factories/Storehouses of Food for Export: '94.

### 11. 14 수출입상품검사국 제정)

#### 제1장 일반원칙

제1조 이 규정은 수출입상품검사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제정되었다. 관련 법령은 "식품위생법", "수

출식품위생법”, “수출입상품검사법시행령” 등이다.

**제2조** 국가는 식품수출을 위한 생산, 가공, 저장을 위한 공장 또는 창고의 위생등록과 신고의 이행을 관장한다. 식품수출을 위한 생산, 가공, 저장을 위한 공장 또는 창고는 위생등록 또는 신고(list entry)의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에만 식품수출을 위한 제조, 가공 그리고 저장이 허가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국(이하 상품검사국이라 한다)은 전세계에 대한 수출식품의 공장 및 창고의 위생등록 또는 신고 작성을 관장한다. 각성, 자치구 및 자치체에 설치된 상품심사부(이하 상품심사부라 한다)은 직접 관할하의 위생등록과 신고를 관장한다.

**제4조** 다음 공장과 창고는 위생등록을 하여야 한다: 통조림, 음료, 가금 및 동물의 고기 및 가공품, 활어를 제외한 수산물과 가공품, 급속냉동식품, 낙농제품, 알, 꿀벌과 가공품, 건조식품, 설탕 함유 밀가루제품, 설탕, 다류 및 카제인을 수출하기 위한 제조 또는 저장을 위한 공장 및 창고, 기타 식품수출을 위한 공장과 창고도 위생관리를 받기 위하여 등록(신고)하여야 한다.

## 제2장 위생등록 신청

**제5조** 위생등록을 하고자 하는 공장/창고는 “식품수출 공장/창고 위생요건(이하 위생요건이라 함)”에 기초를 둔 품질관리시스템을 세워야 하며, “식품수출 공장/창고 위생기준(이하 위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 식품을 수출하고자하는 공장/창고는 수출을 위한 제조시작 전에 위생등록 신청서(3부)를 작성하여 상품심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품질관리매뉴얼, 공장/창고지역도, 제조공정도 및 기타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상품심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장 위생등록 검사 및 등록증 교부

**제8조** 상품심사부 검사관 2~3명은 식품수출을 위한 공장/창고로부터 제출 받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한다. 검사관의 자격은 상품검사국이 제정한 “수출입상품 제조기업에 대한 품질관리검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차 검토후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를 위한 일정, 항목, 절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15일 이내에 검사원이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특정일시가 공장/창고의 직원과 함께 정해진다. 검사후 15일 이내에 검사결과 요건에 맞지 않는 공장/창고는 한달 이내에 보완을 하도록 통보된다. 보완을 하지 못한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9조** 검사의 목적, 근거, 범위, 방법 등은 식품수출 공장/창고 관계자에 통보되며, 검사관의 검사 중 식품수출 공장/창고 관계자는 신청조건을 검사관에게 설명한다.

**제10조** 검사는 질문하기, 기록검토, 위생요건과 규정에 근거한 현장평가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한다. 검사는 감사를 위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제11조** 검사결과는 현존 문제점에 대한 특정기간동안의 개선노력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신청자에게 통보된다. 신청자는 특정 기간 내에 개선보고를 검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제12조** 상품심사부는 검사관의 보고서와 신청자의 개선보고를 검토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검사결과 적합한 신청자에게는 코드번호와 함께 위생등록증을 발부한다. 등록이 거부된 공장/창고의 경우 통보후 6월이 경과후 등록을 위한 재신청이 가능하다.

## 제4장 등록된 공장/창고의 감독과 관리

**제13조** 상품심사부는 관할하의 등록된 공장/창고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관리 및 감독한다.

- ① 등록된 공장/창고의 품질관리시스템의 운영현황을 검사하기 위한 직원의 파견
- ② 제조공정 또는 수출과정상 위생관리이행의 검사
- ③ 품질검사 및 위생검사기록의 검사
- ④ 제품 품질의 무작위검사 등

**제14조** 등록된 공장/창고에 대한 상품심사부의 관리·감독시 위생요건과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공장/창고는 특정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해야한다. 위반정도에 따라 상품심사부는 다음 벌칙을 시행한다.

- ① 경 고
- ② 신청정지
- ③ 제조정지 및 시정지시
- ④ 등록취소

등록의 취소는 기록관리를 위하여 상품검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이 취소된 공장/창고는 벌칙을 통보 받은 후 6월이 경과한 이후에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 위생등록증은 3년간 유효하다. 등록증의 재검사 및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3월 전에 관할 지방 상품심사부에 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에 대한 재검사는 상품심사부에서 제3장에 정한 절차에 따라 행한다.

**제16조** 규정에 따라 재검사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재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수출식품의 제조, 가공 및 제조는 중지되어야 한다. 한편, 등록증은 상품검사국이 취소한 코드번호와 함께 회수된다. 이상의 조치는 자료관리를 위하여 상품검사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위생등록증과 그 코드번호에 대한 변경/삭제, 이전, 대여 또는 대체에 의한 허위 사용과 위조는 금지한다. 위반자는 상품심사부가 수출입상품검사법시행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8조** 상품검사국은 여러 지역에 걸친 등록업무의

관리감독을 관장하며, 필요한 경우 등록된 공장/창고에 대하여 전문가로 하여금 무작위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5장 부 칙

**제19조** 등록된 공장/창고는 검사결과 또는 처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수출입상품검사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 보조 또는 합작 공장/창고나 작업장이 등록된 공장/창고가 있는 동일지역이 아닌 곳에서 공장/창고가 운영되는 경우 별도로 위생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 식품수출을 위하여 해외 위생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공장/창고는 먼저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위생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식품수출 제조기업의 해외위생등록에 관한 행정명령”의 요건 하에 다루어져야 한다.

**제22조**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7. 식품수출을 위한 공장 및 창고 위생요건(Sanitary Requirement for Factories/Storehouses of Food for Export : 94.11.14 수출입상품검사국 제정)

**제1조** 이 요건들은 수출입상품검사법, 식품위생법(임시시행), 수출입상품검사법시행령, 그리고 수출식품위생법(임시시행)의 관련규정에 따라 식품위생의 품질을 보장하고, 수출식품 가공업체의 위생관리를 표준화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제2조** 위생등록을 신청하려는 식품수출 관련 제조, 가공 또는 저장하는 공장/창고는 수출식품의 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시스템을 설정하여야

하며, 그 시스템 운영을 지도할 품질관리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 이 요건들은 식품수출 공장/창고가 식품위생 품질관리시스템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제4조** 식품수출 공장/창고의 식품위생 품질관리시스템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되, 다음 사항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 4.1 위생관리 정책 및 목표
- 4.2 조직과 그 책임
- 4.3 가공자와 검사자 관리
- 4.4 환경위생요건
- 4.5 작업장 및 설비의 위생요건
- 4.6 원재료 및 부재료의 위생관리
- 4.7 생산과정의 위생관리
- 4.8 포장, 저장 및 운송과정에서의 위생관리
- 4.9 요건검사
- 4.10 품질관리기록
- 4.11 내부 품질관리검사

**제5조** 식품수출 공장/창고는 식품위생 품질관리에 대한 정책, 목표 및 책임을 정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식품수출 공장/창고는 제품의 위생을 보장하기 위한 생산능력을 책임질 기구를 만들어야 하며, 관련 권한과 책임이 특정되어야 한다.

**제7조** 식품수출 공장/창고의 식품가공자와 검사자는 다음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7.1 가공자와 검사자는 필요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 7.2 가공자와 검사자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임시검진을 받는다. 신규직원은 작업 배치 전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 7.3 식품위생에 영향을 줄 질병을 가진 자는 식품 생산과정에 종사할 수 없다.
- 7.4 가공자와 검사자는 개인위생을 유지하여야 한다. 생산과 관련 없는 어떠한 물품도 작업장에 들어와서는 아니된다. 작업시간 중 보석/시계를 착용하거나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작

업장에 들어오기전에 작업원들은 손을 세척·소독하고 위생복·모자·위생화를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 종료후 그들을 벗는다.

**제8조** 식품수출 공장/창고는 다음의 환경위생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8.1 식품수출 공장/창고는 식품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여타 제품이 공장/창고 지역에서 관리, 생산 또는 저장되어서는 아니된다.
- 8.2 공장/창고 지역의 도로표면은 평평하여야 하며 침수되어서는 아니된다. 그 지역은 초록식물이 심어져야 한다.
- 8.3 공장/창고 지역의 실험실은 물 세척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파리, 곤충, 쥐 등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벽면하부는 청결을 유지하고 밝은 색으로 칠하여야 하며, 부드럽고 평면으로 침수와 부식이 안되는 물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8.4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하수와 폐기물은省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 8.5 생산능력에 상응한 보조시설이 위생요건에 맞추어 원재료와 포장재를 저장하기 위하여 공장/창고 지역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 8.6 생산지역은 거주지역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제9조** 작업장은 다음 위생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9.1 작업장 지역은 적정하게 배치되고 배수 시설을 갖추며 생산능력에 적합하여야 한다. 바닥 표면은 미끄럽지 않고 촉촉하며 침수와 부식이 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침수되지 아니 하도록 평평하고 청결하여야 한다. 작업장의 출구, 배수와 환기지역은 외부로부터 쥐, 파리 기타 곤충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9.2 작업장의 천장과 내부벽은 페인트칠을 하고 비독성, 防水, 방매(곰팡이)용 물질로 시공하여야 하며, 쉽게 청소할 수 있으며, 표면이 쉽게 벗겨져서는 아니된다. 벽, 바닥과 천장 사이의 구석은 어느 정도 곡면이어야 한다.
- 9.3 벽과 창살의 접속부문은 45도 정도 경사져야 한다. 문과 창문은 가벼운 색깔이고 부드럽고 평면이며 쉽게 청소가 가능하고 침투와 부식 저항성이고 촘촘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9.4 작업장내 생산라인 위에 있는 조명기구는 보호막이 있어야 한다. 작업과 검사지역의 조명도는 가공 물질의 원래 색깔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산과 검사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9.5 작업장은 기술적 요건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통풍이 잘 되어야 한다.
- 9.6 작업장의 물, 증기, 전력은 생산목표량에 적합하여야 한다.
- 9.7 손, 기구, 장비를 닦고 소독하고 건조하기에 충분한 시설이 적당한 장소에 있어야 한다. 수도꼭지는 손으로 작동되어서는 아니된다.
- 9.8 가공조건에 따라 덧신, 신발, 트럭바퀴의 감염 방지 설비가 작업장 입구에 설치되어야 한다.
- 9.9 탈의실, 실험실, 샤워실은 생산요건에 따라 작업장에 인접하여 있어야 한다.
- 9.10 작업장내에 사용되는 작업대, 컨베이어, 기구는 쉽게 청소하고 소독할 수 있도록 비독성, 부식과 녹방지가 되고 촘촘한 재료로 만든 것이어야 한다.

**제10조** 식품생산을 위한 원재료와 부재료는 다음의 위생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 10.1 식품생산을 위한 원재료와 부재료는 검사 또는 검역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생산투입을 위하여 공장에 들어가기 전에 기준에 적합한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 10.2 유효기간이 경과한 식품생산을 위한 원재료와 부재료는 식품생산에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10.3 가공 및 생산용 용수(얼음)는省的 음용수위생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일년에 2회이상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생을 보장하기 위하여 물의 자가공급용 설비가 있어야 한다.

**제11조** 식품생산은 위생안전 원칙에 따라야 하며,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 11.1 식품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점과정에 대하여 운영원칙을 세워야 한다. 그 과정은 계속 관리 및 감독되어야 하며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 11.2 부적절한 제품의 원인을 분석하는 규정을 만들고 그 시정조치는 이행되어야 한다.
- 11.3 생산설비는 합리적으로 배치되고 청결·건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 11.4 작업대, 가공설비, 기구, 용기의 세척 및 소독 체계는 엄격히 수행되어야 한다. 식품용기는 마루바닥과 직접 접촉되어서는 아니된다.
- 11.5 원재료, 반가공품, 최종제품, 요리된 식품 및 요리가 안된 식품은 분리되어 보관·저장하여야 하며, 쓰레기는 알기 쉬운 표시를 부착한 특수 용기에 넣어야 하며 시기에 맞추어 버려져야 한다. 쓰레기의 용기와 운송설비는 시기에 맞추어 소독되어야 한다.
- 11.6 부적합 제품과 바닥에 떨어진 제품은 특정 장소에 분리되어 수집되고 감독자의 감독하에 시기에 맞추어 버려져야 한다.
- 11.7 작업 전후에 청소와 위생조치를 하고 특정 직원이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장·저장·운송시 위생관리체계가 설정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 12.1 모든 식품 포장재료는 위생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청결이 유지되고 위험하거나 독성이

있는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변색되기 쉬워서는 아니된다.

12.2 포장실은 건조하고 잘 통풍이 되어야 하며 내·외 포장물질은 전염차단을 위하여 분리되어 보관하여야 한다.

12.3 식품운송설비는 깨끗하고 위생적이어야 한다. 냉동식품은 청결하고 외부냄새가 차단되는 냉장차량으로 운송되어야 한다.

12.4 전한냉실, 급속냉동실, 냉장창고, 저장고는 기술적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온도계·습도계·자동온도기록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실(room)들은 깨끗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환풍팬이, 쥐, 기타 곤충이 없어야 한다. 실안에 있는 물질들은 벽과 바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떨어져 있어야 한다. 식품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들은 실안에 보관하여서는 안되며, 다른 종류의 식품들은 교차감염이나 상호냄새전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실에 넣어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제품의 위생검사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13.1 생산능력에 상응하는 독립된 검사부서가 있어야 하며 검사·검역에 능력있는 직원이 충원되어야 한다.

13.2 검사부서는 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며, 동 시설과 장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장비계측(calibration)을 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3.3 원·부재료, 반·완전가공 제품, 제조공정에 대한 위생관리의 기준과 규정이 설정되어야 하며 효과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13.4 부적합 제품을 관리하기 위하여 표시, 기록, 평가, 별도 작업과 내용물에 대한 추적 등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3.5 검사기록은 완성되고 정확하고 표준화되어야 한다.

**제14조** 수출식품 공장/창고의 품질관리 기록은 다음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4.1 표시, 수집, 목록, 편집, 보관, 안전관리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 제품위생의 속성과 조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확인되고 만들어져야 한다.

14.2 모든 품질관리 기록은 진실·정확·명확하여야 한다.

**제15조** 내부품질감시체계가 수출식품 공장/창고에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 기록이 품질관리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제16조** 수출입상품검사국은 이 규정에 따라 여러 가지 수출용 식품을 생산·저장하는 공장/창고의 위생등록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위생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모든 수출식품 공장/창고는 이 요건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이 요건은 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 8.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검사법

(1989년 2월 21일 제7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 통과)

### 제1장 총 칙

**제1조** 본 법은 수출입 상품의 검사를 강화하고, 품질을 보증하며, 외국의 무역상대의 권리를 보호하며, 외국과의 무역을 자연스럽게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제2조** 국무원(國務院)은 전국에 수출입 상품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는 국가수출입상품검사국(이하 “상품검사국”으로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 상품검

사국은 산하에 지역수출입상품시험기구(地域輸出商品檢驗機構) (이하 “상품심사부”로 한다)를 두어 그 관할 지역 내로 수출입 되는 상품의 검사를 담당한다.

**제3조** 상품심사부와 상품검사국 또는 상품심사부로부터 인정받은 검사기구는 수출입 상품에 대하여 본법에 의거한 검사를 수행한다.

**제4조** 상품검사국은 무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상품심사부에서 검사할 대상 상품의 목록(이하 상품 목록으로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상품목록에 기재되었거나 또는 타 법률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출입 상품은 상품심사부 또는 상품검사국 또는 상품심사부에서 인정한 검사기구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어떠한 상품도 판매 또는 사용되어서는 아니되며,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검사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기준이 아닌 상품은 수출하지 못한다.

본 조항 첫째 문장에서 기술한 상품이라도 수취인과 화주의 신청에 의하여 상품검사국의 허가를 받으면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제6조** 상품심사부에서 실시하는 수출입 상품에 대한 검사는 품질, 규격, 수량, 무게, 포장과 안전 및 위생을 위한 기준·규격을 포함한다.

관련 법 또는 행정 조치에 의한 강제규격 또는 검사기준에 준하여 제조한 수출입상품은 제조 시 강제규격 또는 검사기준으로 검사한다.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무역상대국의 규격·기준에 준하여 검사한다.

**제7조** 수출입상품과 관련 법률에 의한 검사대상 품목은 법률에 의거하여 검사한다.

**제8조** 상품검사국과 상품심사부는 수출입 상품의 검사에 관한 정보를 관련 부처에 제공하고 수집한다.

## 제2장 수입 상품의 검사

**제9조** 본법에 의하여 상품심사부의 검사 대상이 되는 수입 상품의 경우 수취인은 하적항 또는 도착장소를 관할하는 상품심사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상품목록에 기재된 상품은 통관서류에 상품심사부에서 부착한 증명이 있어야 통관이 이루어진다.

**제10조** 본법에 의하여 상품심사부의 검사대상이 되는 수입 상품의 경우 수취인은 관할상품심사부에서 정한 장소에 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상품심사부는 무역 상대국이 정한 기간이내에 검사를 마치며, 검사증명서를 발부한다.

**제11조** 본법에 의한 검사대상이 아니나 청구의 목적으로 상품심사부의 검사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품질 규격 미달, 파손 또는 무게 또는 수량 미달인 수입 상품의 경우에 수취인은 관할 상품심사부에 검사증명서 발급을 신청한다.

**제12조** 일부 중요한 수입상품 또는 한 세트의 크기가 큰 경우, 수취인은 무역 계약의 조문에 따라 수출국에서 선적 전에 제조자의 입회 하에 1차 검사를 한다.

## 제3장 수출 상품의 검사

**제13조** 본법에 의하여 상품심사부의 검사대상이 되는 수출상품의 경우 화주는 상품심사부에서 정한 장소에 기간내에 검사를 신청한다. 상품심사부는 선적을 위하여 정한 기간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성적서를 발급한다.

상품목록에 기재된 상품의 경우 관세청은 상품심사부에서 발급한 반출증명서 또는 상품심사부에서 통관절차를 위하여 부착한 봉인을 확인하고 반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상품심사부에서 검사증명서와 반출증명서가

발급된 수출상품은 상품심사부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반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간을 어겼을 경우에는 적절한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험물 수출을 위한 포장을 생산하는 업체는 상품심사부에 성능시험을 신청하여야 한다. 위험물을 생산하는 업체는 상품심사부에 포장의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시험을 거치지 않았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위험 수출상품과 그 포장은 수출할 수 없다.

**제16조** 부패하기 쉬운 식품에 사용하는 선박의 홀드 또는 컨테이너의 경우, 선적 전에 운송선 또는 컨테이너 선적조합에서 상품심사부에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기술적으로 식품의 운송에 부적합한 화물선 또는 컨테이너는 식품을 운송하지 못한다.

## 제4장 관리와 감독

**제17조** 상품심사부는 본법에서 정하는 상품 이외에도 수출입 상품에 대하여 무작위 검사를 할 수 있다. 무작위 검사 결과 규격에 미달되는 상품은 수출하지 못한다.

**제18조** 상품심사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장에서 출고되기 전에 수출 상품에 대한 품질 감독의 일환으로 검사원을 상품목록에 기재된 수출 상품 제조공장으로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 상품심사부는 상품검사국과 외국 담당 기관과의 협정 또는 외국 담당 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수출입 상품에 대한 품질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적합한 수출입 상품에는 품질증명서를 붙일 수 있다.

**제20조** 상품검사국과 상품심사부는 검사의 필요성에 따라서 국내·외 기구 또는 기관을 지정된 검사에 대한 수출입 상품의 검사소로 시험에 의하여 인정한다.

**제21조** 상품검사국과 상품심사부는 인정 또는 인증된 수출입 상품의 시험 기구 또는 기관의 수출입 상품에 대한 검사를 감독하며, 그들에 의하여 검사된 상품을 무작위로 검사할 수 있다.

**제22조** 정부는 필요한 경우 수출입 상품과 그 제조업자에 대하여 안전증명서 제도를 설립할 수 있다. 상품검사국은 국무원의 타 관련 부서와 함께 특정 조치를 정할 수 있다.

**제23조** 상품심사부는 필요한 경우 수출입 상품에 검사 표시 또는 봉인을 할 수 있다.

**제24조** 수출입 상품의 검사를 신청한 자가 상품심사부의 검사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품심사부, 상급 상품심사부 또는 상품검사국에 재검을 요청할 수 있다. 상품심사부 또는 상품검사국은 재검 결과를 내려야 한다.

**제25조** 상품심사부, 상품심사부로부터 인정받은 검사기구 및 상품검사국으로부터 인정받은 검사기구는 무역 상대 또는 무역 상대국의 검사기관의 의뢰로 수출입 상품에 대한 조사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수출입 상품에 대한 감독과 조사의 범위는 수출입 상품의 품질, 수량, 중량과 포장 조사, 특정 또는 일반적인 화물의 선적 및 하역시의 파손, 수출 상품에 대한 기술적 조건 검사, 용적톤수의 측정, 원산지 또는 가치 증명서를 포함한다.

## 제5장 법률 책임

**제26조** 본법의 규정에 의한 상품목록에 있거나 타 법률에 의한 검사 대상인 수입 상품을 검사 신청 없이 판매 또는 사용한 자 또는 상품목록에 있거나 타 법률에 의한 검사 대상인 수출 상품의 검사 신청 없이 수출한 자 또는 상품목록에 있거나 타 법률에 의한 검사 대상인 수출 상품의 규격 미달인 제품의 수출한 자에 대하여 지방검사소는 벌금형을 가한다.

**제27조** 만약 상품 검사증명서, 문서, 봉인, 인장, 표시와 수량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자는 형법 제167조에 의하여 기소되며, 상황이 가볍다면 그는 지방검사소의 벌금형을 받는다.

**제28조** 지방검사소의 처벌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벌칙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고해 줄 것을 처벌한 지방검사소, 상위 지방검사소 또는 상품검사국에 신청할 수 있다. 재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할 수 있다. 재심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하지 않았거나, 주어진 기간내에 벌칙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검사소는 강제 집행을 법원에 신청한다.

**제29조** 상품검사국 또는 지방검사소의 공무원 또는 상품검사국 또는 상품심사부로부터 인정받은 검사기구의 검사원이 권력 남용, 뇌물 수수, 거짓 검사, 또는 검사와 검사증명서에 대한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태의 경중에 따라 형법에 근거한 제재 조치 또는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를 받는다.

## 제6장 부 칙

**제30조** 본법에 근거하여 검사, 감독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상품심사부와 기타의 검사기구는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수수료를 받는다. 수수료는 상품검사국이 국무원산하 타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1조** 본법을 수행하기 위한 규정은 상품검사국에서 작성하며, 국무원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후에 시행한다.

**제32조** 본법은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4년 1월 28일 국무원에 의하여 설립된 중국 수출입 상품의 검사 규정은 동일자로 폐지된다.

## 별 칙 형법의 관련 조항

**제187조**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국가의 재산 또는 국민의 이익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는 5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수감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제167조** 정부기관, 사업체, 연구소, 기구 또는 공공기구의 공문서, 증명서 또는 봉인을 모조하거나, 변형하거나, 훔치거나, 파괴하는 자는 3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수감 또는 구류에 처한다. 사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을 선고한다.

※ 주의: 영어판의 내용이 중국어판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중국어판이 우선한다.

## 9.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검사법 실시조례

(1992년 10월 7일 국무원 비준, 1992년 10월 23일 국가수출입상품검사국 발표)

### 제1장 총 칙

**제1조**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검사법(이하 "상검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수출입상품검사국(이하 "상품검사국"라 한다)은 전국의 수출입상품에 대한 검사의 책임이 있다.

**제3조** 상품검사국에 의하여 중앙정부의 직접 관할인省外, 자치부와 직할시를 비롯하여 항구와 수출입 상품 집하장의 수출입 상품 검사 사무국과 이의 지소(이하 "상품심사부"라 한다)는 관할 지역내의 수출입 상품에 대한 검사의 책임이 있다. 상품심사부는 수출입 상품에 대한 검사와 조사 및

수출입 상품의 품질과 검사의 책임을 갖는다.

**제4조** 외국과의 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상품검사국은 상품심사부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관심에 따라 검사대상 수출입 상품 목록(이하 “상품목록”이라 한다)을 작성, 발표하여야 한다.

**제5조** 다음의 각 항에서 기술하는 수출입 상품은 상품검사국에서 정하는 상품심사부에서 법적 검사를 받아야 한다.

- (1) 상품목록에 등재된 상품
- (2) 수출 식품의 위생검사
- (3) 위험물의 포장과 용기의 성능 및 이용 시험
- (4) 수출을 위하여 부패하기 쉬운 식품 또는 냉동 식품을 운송하는 선박 또는 컨테이너의 운송에 대한 적절성
- (5) 관련 국제 협약에 의하여 상품심사부에서 실시되는 수출입 검사
- (6) 기타 법령에 의하여 상품심사부가 실시하는 수출입 검사

**제6조** 수출입 약품의 위생검사, 측정기기의 오차수정, 수출입 보일러의 안전 검사, 선박(근해 플랫폼, 선박용품을 포함)과 컨테이너 조사, 항공기 안전과 항공기(엔진과 기구를 포함)의 적절성 검사와 핵 기구의 안전성 검사는 관련 법령 또는 지침에 의하여 타 검사기관에서 검사한다.

**제7조** 상품심사부는 법정 검사 대상이 아닌 수출입 상품에 대한 조사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상품심사부에 의한 법정 검사대상이 아닌 수출입 상품은 무역 당사국의 검사증명서 요구사항에 따라 또는 상품의 화주와 수취인의 계약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여 검사증명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8조** 수출입 견본, 선물, 무역이 아닌 전시와 기타의 무역이 아닌 물품은 정부에서 정하거나 또는 상대 무역국에서 요구하지 않는다면 검사를 면할 수 있다.

상품목록의 수출입 상품의 품질이 계속적으로 합

격하거나, 상품검사국에 의하여 인정된 무역상대국의 검사기구의 검사결과 계속적으로 합격하는 경우 수출입 상품은 수취인, 화주 또는 제조자의 신청에 의한 상품검사국의 결정에 의해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수출입 상품 검사에 대한 예외조항은 상품검사국에서 정한다.

**제9조** 상품심사부에서 수행하는 검사는 품질, 규격, 수량, 무게, 포장을 비롯하여 위생과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제10조** 상품심사부는 다음의 규격과 절차에 의하여 수출입 상품을 검사하여야 한다.

- (1) 법, 행정조치와 규정 또는 반드시 지켜야할 검사규격과 같은 강제규격
- (2) 강제규격 또는 반드시 지켜야할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무역상대국에서 정한 규격 또는 상품이 견본과 다를 때에는 견본을 기준으로 하여 검사한다.
- (3) 강제규격 또는 반드시 지켜야할 검사규격이 외국의 규격·기준보다 낮은 경우 후자의 규격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무역이 제공된 견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견본과 계약에 의거하여 검사한다.
- (4) 강제규격 또는 반드시 지켜야할 검사규격이 없으며, 외국에도 규격·기준이 없거나 확실하게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제조국의 규격 또는 관련 국제규격 또는 상품검사국에서 인정한 규격에 따라 검사한다.

**제11조** 대외 무역과 검사의 필요성에 따라, 상품검사국은 수출입 상품에 적용할 규격을 설정할 수 있다.

**제12조** 상품심사부의 검사원은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법에 의하여 검사원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원을 방해하면 아니된다.

## 제2장 수입 상품의 검사

**제13조** 법에 의한 검사 대상인 수입 상품의 경우 수취인은 하적항 또는 도착 장소를 관할하는 상품심사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상품목록에 기재된 상품은 통관서류에 상품심사부에서 부착한 증명기가 있어야 통관이 이루어진다.

**제14조** 무역계약서 또는 선적 서류에 검사장소가 기재되어 있는 수입 상품의 경우 검사는 반드시 기재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이러한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는 하적항, 도착 장소, 또는 상품심사부가 지정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벌크상태의 대형, 쉽게 변패하는 상품, 또는 하역하는 도중 파손 또는 수량/중량 부족이 발견된 경우 검사는 하적항 또는 도착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완전한 세트의 장비, 기계, 전기 장비와 측정기, 설치와 함께 검사하여야 하는 설비 및 성능 시험과 개봉 후 재포장이 실효성이 없는 상품의 경우 검사는 수취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입 상품의 경우 등록된 수취인은 계약서, 송장, 물품 목록, 입항신고서와 필요한 문서를 기간 내에 상품심사부에 신청하여야 하며, 상품심사부는 검사 또는 검사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은 판매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입 상품이 아니라도 외국의 무역 계약에 의하여 상품심사부에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검사를 신청한다.

**제16조** 검사를 신청한 수입식품의 경우, 상품심사부는 청구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검사 결과 규격에 적합한 상품은 검사 결과를 발행하여야 하며, 규격 또는 외국의 무역 계약에 부적

합한 상품의 경우는 이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7조** 법률 또는 관련 규정에 의한 강제 규격 또는 검사에 적용되는 검사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경우에는 상품심사부의 감독 하에 기술적인 처리를 하여야 한다. 재검사 결과 규격에 적합하여야 판매 또는 사용이 허용된다. 기술적인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재검사 결과 부적합한 상품에 대하여 상품심사부는 수취인에게 반송 또는 폐기를 명령한다.

**제18조** 기술적 처리 후 상품심사부에 의한 재검사를 하여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는 설치와 운전을 허용한다.

**제19조** 차량의 경우 수취인은 상품심사부에서 발행한 수입차량증명서에 의하여 차량관리사무소로부터 번호판을 취득하며, 변포판의 유효기간 30일 전까지 상품심사부에 차량 상태를 보고한다.

**제20조** 수취인은 법에 의한 검사대상이 아닌 상품의 경우에는 계약에 의한 자가 검사를 하여야 한다. 상품심사부는 무작위와 확인 검사를 하며, 수취인의 검사 절차를 감독한다. 검사에 의하여 상품이 규격에 부적합한 경우 또는 청구를 위한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수취인은 상품심사부에 검사와 증명서를 신청한다.

**제21조** 상품심사부의 무작위 또는 확인 검사 과정에서 부적합하여 배상을 청구한 경우, 수취인은 상품 또는 건본의 충분한 양을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교환을 하지 않은 상태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수입 상품이 하역과정에서 파손 또는 수량 부족이 확인되어 배상을 청구한 경우, 항구의 상품심사부에 검사와 증명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하역한 제품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 정부 또는 국민의 관심을 끄는 중요한 수입 상품 또는 첨단 기술의 고가 상품의 경우, 수취인은 외국 무역 계약에 의한 감시 하에 초기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출국은 제조와 선적을 감시하여야

하며, 재검사와 청구권은 계약의 조문에 의하여 유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취인은 초기 검사와 제조자의 제조와 선적을 계약에 의하여 감시한다. 수취인의 관리부서는 수입 상품의 초기 검사와 선적 전의 제조 및 선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품심사부는 검사원의 파견 또는 조기 검사와 제조 및 선적에 대한 감시를 조절할 수 있다.

### 제3장 수출 상품의 검사

**제24조** 법에 의한 검사 대상인 수출 상품의 경우 화주는 상품심사부에서 지정한 시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계약서 또는 관련 문서를 제출하여 상품심사부에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상품심사부는 직접 검사를 하거나 또는 검사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법에 의한 검사 대상이 아니나 외국과의 계약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출상품에 대한 신청과 검사 절차는 전술한 바와 같다.

**제25조** 검사를 이미 신청한 수출 상품의 경우 상품심사부는 선적에 늦지 않도록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검사 결과 적합한 수출 상품에 대하여서는 증명서 또는 봉인을 하여 통관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제조 장소에서 검사가 필요하나, 수출항에서 증명서가 필요한 수출 상품의 경우에는 제조 장소의 상품심사부는 특기한 바와 같은 보증서를 발행한다. 이러한 상품의 화주는 제한된 기간 내에 항구의 상품심사부에 대조검사를 위하여 보증서와 관련 문서를 제출한다. 규격에 적합한 수출 상품은 통관증명서 또는 봉인을 하여 통관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6조** 법에 의한 검사 대상이 아닌 수출 상품의 경우, 상품심사부는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무작위로 무역관련 부서 또는 제조자의 검사를 근거로 검사할 수 있다.

**제27조** 상품심사부의 검사 결과 적합한 수출 상품의 경우, 화주는 검사증명서 또는 통관 통보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선적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선 또는 살아있는 상품의 경우에는 특기된 날짜 이내에 선적을 신청하여야 한다.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상품심사부에 재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8조** 위험물의 수출을 위한 포장 또는 컨테이너를 제조하는 업자는 포장 또는 컨테이너의 성능 검사를 상품심사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상품심사부의 시험증명서를 획득한 포장 또는 컨테이너만을 위험물의 운송에 이용하여야 한다.

수출을 위하여 위험물을 제조하는 업자는 포장 또는 컨테이너의 적용에 관한 허가를 상품심사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상품심사부의 시험증명서를 획득한 포장 또는 컨테이너만을 위험물의 운송에 이용하여야 한다.

**제29조** 수출을 위하여 부패하기 쉬운 식품 또는 냉동 식품을 운송하는 선박의 홀드(holds) 또는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선박회사 또는 관련 기관에서 선적 전에 청결도, 위생, 냉동효율과 밀폐도 등이 이러한 상품의 운송에 적합한가를 지역검사기관에 검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증명서가 첨부된 선박에만 선적하여야 한다.

**제30조** 규정 또는 행정 조치에 의하여 검사 대상인 수출 상품의 경우에는 제25, 28 및 29조에 기술된 바와 같은 증명서, 통관 통보 또는 봉인이 있어야 통관이 된다.

**제31조** 상품심사부의 검사, 대조 검사 또는 무작위 검사의 결과 부적합한 상품은 수출하지 못한다.

### 제4장 수출입 상품의 조사

**제32조** 상품심사부와 상품검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은 외국의 무역 상대, 국내의 관련자 또는 외국의 검사 기관으로부터 제한된 범위내의 수출입 상품 조사를 위임받을 수 있고 조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3조** 수출입 상품의 조사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수출입 상품의 품질 검사, 품질과 무게 조사, 포장 조사와 무게 평가
- (2) 수출입 상품의 선적과 하역 감독
- (3) 수출입 상품의 적하장 조사, 파손된 화물 검사와 일반 또는 특정 평균에 관련한 화물 검사
- (4) 수출 상품의 선적을 위한 선박, 차량, 항공기와 컨테이너의 적합성 검사
- (5) 수출입 상품의 선적을 위한 부족분 측정, 선박의 홀드 또는 탱크 봉인, 해치(hatch) 조사
- (6) 컨테이너와 내용물 조사
- (7) 수출입 상품과 관련된 분류, 품질, 수량 및 외국 기업의 자산 측면에서의 가치 평가
- (8) 여러 가지 견본의 선발 및 봉인
- (9) 검사 또는 조사 증명서의 발행
- (10) 기타 수출입 상품에 대한 조사

**제34조** 상품검사당국은 외국 무역 상대의 신청에 따라 관련 법, 규정 및 행정 조치와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 System of Preferences)에 근거한 원산지증명을 발행할 수 있다.

**제35조** 상품심사부에 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 무역 상대는 계약서, 신용장 또는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장 감시와 관리

**제36조** 상품검사국과 상품심사부는 수취인, 화주, 제조자, 저장업자, 운송자와 상품검사국 또는 상품심사부로부터 인정받은 검사기관 또는 검사원의 수출입 상품의 검사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한다.

**제37조** 상품검사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 관련 기관과 품질보증협정을 맺을 수 있다. 상품심사부는 관련 협정 또는 외국 관련기관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수출입 상품을 검사할

수 있다. 증명 절차에 의하여 인정되는 수출입 상품과 제조업자의 경우 증명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이러한 상품에 대하여는 품질증명표시 부착이 허용된다. 상품검사국은 관련 특정 조문을 만들어야 한다.

**제38조** 위생과 안전을 국가에서 요구하는 수출입 상품과 이의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수입 상품 위생 허가증과 수출 품질 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상품검사국은 국무원의 관련 부처와 함께 특별 조문을 설정한다.

상품검사국으로부터 수입 상품 위생 허가증을 발급 받지 아니하고는 수입 상품 위생 허가증이 필요한 상품은 수입하지 못한다.

상품검사국과 국무원의 관련 부처로부터 수출 상품 위생 허가증을 발급 받지 아니하고는 수출 상품 위생 허가증이 필요한 상품은 수출하지 못한다.

**제39조** 국무원은 수출 식품과 이의 제조업자(도살장, 가공공장, 저장창고, 냉장창고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게는 위생등록·명단작성제도(list entry system)를 적용하여야 한다. 상품검사국은 국무원의 관련 부처와 함께 특별 규정을 설정한다.

수출 식품 제조업자는 위생등록과 명단작성제도의 적용을 상품심사부에 신청하여야 하며, 상품검사국의 허가 없이는 식품을 제조, 가공, 저장하지 못한다.

외국의 등록이 필요한 수출 식품 제조업자는 앞의 위생등록과 명단작성제도를 일관되게 처리하기 위한 신청을 상품검사국에 한다.

**제40조** 수출을 위한 상품의 제조업자의 신청 또는 외국 무역 상대의 요구에 의하여 상품심사부는 제조업자의 품질 보증 제도를 평가한다. 이에 대한 상세한 조문은 상품검사국이 제정한다.

**제41조** 수출입 상품의 증명서의 사용이 허용되었거나, 수입 증명 허가서, 수출 품질 허가서 사용 또는 위생 등록·명단작성제도에 등록된 수출입 상품

의 제조업자를 재검사한 결과 지정된 규격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방검사소는 지정된 기간 내에 개선을 명령한다. 정한 기간이 지나도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증명서 표시의 사용 취소 또는 상품검사국의 허가 사항인 품질허가증, 위생등록·명단작성제도가 취소된다.

**제42조** 검사의 필요성에 따라, 법에 의하여 상품심사부는 제조 공장에서 발송하기 전의 시험 조건, 제조 조건의 검사와 감독 및 품질관리 제도와 수출 상품의 원료, 최종제품과 부품, 포장, 표시등에 대한 검사 또는 관리를 하여야 하는 수출 상품의 제조업자에 검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43조** 상품심사부는 필요한 경우 수출입 상품에 검사를 통한 상품 검사 증명서의 표시를 부착할 수 있으며, 봉인하여야 하는 수출입 상품의 경우 봉인을 할 수 있다. 상품 검사 증명서 표시와 봉인은 상품검사국에서 관리한다.

**제44조** 상품심사부 또는 상품검사국 또는 상품심사부에 의하여 인정된 검사기관은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 상품의 검체를 채취한다. 관련 부처는 지정된 기간 내에는 검사 후 검체를 다시 채취할 수 있다. 제한된 기간 내에 관련 부서에서 직접 검체를 다시 채취하는 경우, 앞에 기술한 검사소 또는 검사 기관은 검체를 폐기할 권리가 있다.

**제45조** 상품심사부의 검사원이 제조 또는 건설 장소, 항구, 공항, 역, 창고 또는 운송 차량에서 법에 의한 검사, 조사, 감독 또는 관리를 하는 경우, 부서는 작업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46조** 상품검사국과 상품심사부는 검사 작업의 필요에 따라 수출입 상품의 검사 또는 지정된 상품의 품질허가증과 증명서 시험과 인정된 제조업자의 시험을 위하여 국내·외 검사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인정된 검사기관이 재검사에 의하여 약정된 필요

사항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상품검사국과 상품심사부는 지정된 사항을 취소한다.

**제47조** 상품심사부는 필요한 경우 검사와 평가를 위하여 관련기관의 검사직원을 검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8조** 중국 내에서 수출입 상품에 대한 검사와 조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의 기관은 상품검사국으로부터 검사와 합의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영업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지정된 범위내의 검사와 조사 사업이 허용되며, 상품검사국과 상품심사부의 관리와 감시를 받아야 한다.

**제49조** 검사 신청자가 수출입 상품의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래의 상품심사부, 상급 상품심사부 또는 상품검사국에 재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 신청을 받은 원래의 검사소 또는 기타 검사소는 재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재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재검결과에 대하여도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재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품검사국에 재검을 신청할 수 있다. 상품검사국은 60일 이내에 결론을 내리며, 이 결과는 최종이다.

## 제6장 법률 책임

**제50조** 다음에 기술된 행위를 하여 상검법 또는 이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위반의 경중에 따라 회람, 경고 또는 검사 신청의 취소를 통한 제재를 하며, 상품심사부에 의하여 총 수출입 상품가격의 1% 내지 5%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법 또는 관련 규정, 행정조치에 의하여 수입 상품 검사대상이나 검사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 또는 사용 또는 법에 의하여 수출시 검사 대상이나 검사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수출한 경우

- (2) 수입 위생 허가제도, 수출 위생 허가제도 또는 위생등록·명단작성제도에 해당하는 수출입 상품을 관련 허가증 없이 수입, 판매, 사용한 경우
- (3) 부패하기 쉬운 식품 또는 냉동 식품의 운송에 부적합하거나 적합하다는 증명서를 가지지 아니한 선박의 홀드 또는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경우
- (4) 상품심사부의 조사를 받지 아니한 포장 또는 컨테이너를 위험물의 수출을 위하여 제공 또는 사용하는 경우
- (5) 기타 상품심사부의 강제 검사를 회피한 경우

**제51조** 다음에 기술된 행위를 하여 상검법 또는 이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위반의 경중에 따라서 회람, 경고 또는 검사 신청의 취소를 통한 제재를 하며, 상품심사부에 의하여 총 수출입 상품 가격의 5% 내지 2%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상품심사부의 검사 결과 강제 규격 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상품을 판매 또는 사용한 경우
- (2) 상품심사부의 검사 또는 무작위 검사 결과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품을 수출한 경우
- (3) 허가 없이 상품심사부에서 검사한 수출 상품의 품질, 수량, 규격, 무게와 포장을 변경시키거나 상품심사부에 의하여 채취된 검체를 임의로 바꾼 경우
- (4) 상품심사부에 의하여 포장 또는 상품에 부착된 상품 검사 표시, 봉인과 검사 표시를 임의로 바꾸거나 손상시킨 경우
- (5) 상품심사부의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포장 또는 컨테이너를 위험물의 수출을 위하여 제공 또는 사용하는 경우
- (6) 실제와 다르게 상품심사부에 검사를 신청하고, 성실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증명서 또는 서류를 발급 받은 경우

**제52조** 검사를 신청한 수출 제품이 저급 품질의 위

조품인 경우, 상품심사부 또는 관련기관과 관계된 상품검사소는 생산업자와 무역관련업자에게 제조와 수출의 중지를 명령하고, 감독 하에 가짜로 의심되는 제품을 폐기하며, 이와 함께 또는 따로 수출 상품의 가격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 제50 내지 제52조에 기술된 위반을 하여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직접적으로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은 형법에 의하여 기소한다.

**제54조** 상품검사증명서 또는 문서, 봉인, 인장 표시, 품질증명서 표시를 변조, 위조 또는 불법사용한 자와 상품검사증명서 또는 문서와 표시를 지우거나 변경한 자가 이를 수출입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0에서 30,000 RMB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수출입에 사용한 경우에는 총 상품의 가치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러한 행위가 위법인 경우에는 형사법에 의하여 기소한다.

**제55조** 상품검사국 또는 허가된 관련 검사기관의 허가 없이 임의로 정당하지 아니한 검사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상품심사부에 상품 검사의 중지를 명하고, 불법으로 얻은 이익의 세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6조** 벌금을 부과 받은 자는 상품심사부로부터 벌금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모든 벌금은 재정부에 귀속한다.

**제57조** 상품심사부가 부과한 벌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벌금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을 부과한 상품심사부 또는 상위 검사기관에 재고를 신청할 수 있다.

재고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고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정에 소송할 수 있다.

지정된 기간 이내에 재고 신청 또는 법정 소송을 하지 않고 벌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검사소는 법원에 강제집행 소송을 낸다.

**제58조** 권력의 남용, 독직, 횡령, 의무 망각과 검사 기간을 어긴 상품검사국 또는 지방검사소는 상위의 기관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아야 하며, 중요한 위법행위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자는 형사법에 의하여 기소한다.  
상품검사국 또는 상품심사부로부터 인정받은 검사 기관의 검사원 또는 지정 받은 검사원이 위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기의 조문에 의한 처벌을 받는다.

## 제7장 부 칙

**제59조**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상품심사부가 수출품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는 경우,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에 따라 수행한다.

**제60조** 상품검사국은 본 실시조례를 해석할 권한을 갖는다.

**제61조** 본 실시조례는 공표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 주의 : 영어판의 내용이 중국어판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중국어판이 우선이다.